

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(안)

의안 번호	103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(안)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.

2. 제안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
- 「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제3조
- 「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

3. 주요골자

- 운용개요
 -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유지·보수
 -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
 - 건설한 기금관리를 위해 50%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
- 기금현황

설치년도	설치목적	설치근거	비고
2010. 02.22	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○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	

- 기금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			지출 계획				
계	출연금	보조금	융자금 회수 (이자 포함)	예치금회 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고유목적 사업비	융자금	예치금	기타 지출
240,507				168,507	3,000	69,000	240,507	30,200		210,307	

- 기금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2013년도 말 현재액 ①	2014년도 기금운용계획		2014년도 말 현재액 ④=①+②-③	증감 ④-①
	수입 ②	지출 ③		
168,507	72,000	30,200	210,307	41,800

4. 내 용

- 별첨 :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(안)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034)

1. 의안명 :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11. 15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3. 11. 15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3. 12. 9.(월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,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(안)을 수립·운용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수입

(단위 : 천원)

계	예치금회수	이자수입	기타수입
240,507	168,507	3,000	69,000

○ 지출

(단위 : 천원)

계	사업비	예치금	비고
240,507	30,200	210,307	

4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석기)

- 옥외광고물정비계획은 수입과 지출은 각각 전년도 보다 84,468천원이 증가된 240,507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-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책자 60쪽, 지출계획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0,2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수거보상금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, 경관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,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을 위한 용도도 편성되어야 하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가결